

##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

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
| 제정   | 1987. | 1.  | 24. | 규칙 | 제 407호       |
| 개정   | 1989. | 10. | 10. | 규칙 | 제 553호       |
| 개정   | 1990. | 9.  | 3.  | 규칙 | 제 613호       |
| 개정   | 1992. | 5.  | 15. | 규칙 | 제 707호       |
| 개정   | 1994. | 3.  | 18. | 규칙 | 제 823호       |
| 개정   | 1995. | 6.  | 29. | 규칙 | 제 915호       |
| 개정   | 1996. | 8.  | 28. | 규칙 | 제 966호       |
| 개정   | 1999. | 6.  | 1.  | 규칙 | 제1031호       |
| 개정   | 2000. | 7.  | 3.  | 규칙 | 제1075호       |
| 개정   | 2002. | 1.  | 18. | 규칙 | 제1118호       |
| 개정   | 2004. | 7.  | 7.  | 규칙 | 제1168호       |
| 개정   | 2006. | 11. | 1.  | 규칙 | 제1213호       |
| 개정   | 2008. | 12. | 30. | 규칙 | 제1248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1. | 5.  | 19. | 규칙 | 제1297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2. | 5.  | 16. | 규칙 | 제1327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3. | 5.  | 1.  | 규칙 | 제1360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4. | 5.  | 15. | 규칙 | 제1387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5. | 5.  | 11. | 규칙 | 제1420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6. | 5.  | 19. | 규칙 | 제1445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6. | 10. | 20. | 규칙 | 제1457호(제명개정) |
| 일부개정 | 2017. | 4.  | 17. | 규칙 | 제1473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8. | 4.  | 4.  | 규칙 | 제1501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9. | 6.  | 10. | 규칙 | 제1535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20. | 6.  | 15. | 규칙 | 제1567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21. | 6.  | 18. | 규칙 | 제1594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22. | 11. | 25. | 규칙 | 제1625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23. | 12. | 22. | 규칙 | 제1653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24. | 5.  | 17. | 규칙 | 제1665호       |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제2조(직무대행)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(이하 “지휘자”라 한다)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전문개정 2016. 10. 20.]

제3조(공연) ①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에 따른 안양시 시립예술단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은 정기공연 외에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0. 20., 2021. 6. 18.>

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

월 전에 「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(이하 “문화예술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0. 20., 2021. 6. 18.>

제4조(단원의 종류와 정원) 예술단 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6. 10. 20.>

제4조의2(계약) ① 지휘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(소년소녀)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0. 20.]

제5조(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)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·예능수당·직책수당·조정수당으로 하며,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4. 7. 7., 2006. 11. 1., 2014. 5. 15., 2015. 5. 11., 2016. 10. 20., 2020. 6. 15., 2022. 11. 25.>

1. “본봉”이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하며,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한다.
2. “예능수당”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.
3. “직책수당”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4. 삭제 <2022. 11. 25.>
5. “조정수당”이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6. 국·공립 및 사립기관에 상근하여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단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겸임수당과 별표 3-2에 따른 예능수당만을 지급한다.

[제목개정 2014. 5. 15.]

제6조(실비보상) ① 상임단원이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 3, 별표 3-2의 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·해촉의 경우에는 월 지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

지급한다. 다만,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  
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, 2021. 6. 18.>

② 예술단별 직책수당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6. 10. 20., 2021. 6. 18.>

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 수당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. 다만,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④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.  
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⑤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10. 20.>

1. 전형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: 250,000원
2. 전형시간이 4시간 초과하는 경우: 300,000원

⑥ 단원이 정기공연, 기획공연, 특별공연에 출연할 때에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40,000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, 2019. 6. 10., 2021. 6. 18.>

⑦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. <개정 2014. 5. 15.>

⑧ 상임단원의 독주회에는 1명 1회 100만원, 협연시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단원 개인당 장려수당 지급은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4. 5. 15.>

⑨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⑩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각종 수당의 지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 <신설 2015. 5. 11.>

제7조(정근수당) 상임단원(겸임수당을 받는 상임단원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3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되, 지급시기는 1, 3, 6, 7, 9,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본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.  
<개정 2002. 1. 18., 2014. 5. 15., 2020. 6. 15.>

[제목개정 2020. 6. 15.]

제7조의1 삭제 <2016. 10. 20.>

제7조의2(명절휴가비)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12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, 설·추석이 포함된 월에 각각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. <개정 2020. 6. 15., 2021. 6. 18.>

[본조신설 2016. 10. 20.]

[제목개정 2020. 6. 15.]

제7조의3(자녀학비보조수당)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단원에게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6. 10.]

제7조의4(연가보상비) 단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6. 10.]

제7조의5(가족수당) 부양가족이 있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1. 25.]

제8조(상임단원 호봉조정)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. <개정 2014. 5. 15.>

② 예술단별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과 같이 획정한다. <개정 2016. 10. 20.>

③ 삭제 <1989. 10. 10.>

④ 대학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0. 20., 2020. 6. 15.>

⑤ 그 밖의 단원의 초임급여는 1호봉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5. 15., 2020. 6. 15.>

⑥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 시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급여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⑦ 단원의 호봉별 승급기간은 별표 9와 같다. <개정 2016. 10. 20.>

⑧ 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다.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

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확정한다. <개정 2014. 5. 15.>

⑨ 호봉조정은 매월 실시한다. <개정 2019. 6. 10.>

제9조(상임단원 정기평정)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. <개정 2021. 6. 18.>

② 정기평정은 매년 12월에 상임단원 중 정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연구단원은 정단원과 같이 실시하되 정단원의 점수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평정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>

④ 정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15., 2016. 10. 20., 2021. 6. 18.>

[제목개정 2016. 10. 20.]

제10조(시행규정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 5. 15.>

#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10. 10. 규칙 제55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0. 9. 3. 규칙 제61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2. 5. 15. 규칙 제70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4. 3. 18. 규칙 제82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5. 6. 29. 규칙 제91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8. 28. 규칙 제96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6. 1. 규칙 제103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7. 3. 규칙 제1075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2002. 1. 18. 규칙 제1118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2004. 7. 7. 규칙 제116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6. 11. 1. 규칙 제1213호>

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30. 규칙 제1248호>
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5. 19. 규칙 제129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2. 5. 16. 규칙 제132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3. 5. 1. 규칙 제136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4. 5. 15. 규칙 제138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5. 5. 11. 규칙 제142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6. 5. 19. 규칙 제144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6. 10. 20. 규칙 제145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에 체결된 지휘자의 채용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7. 4. 17. 규칙 제147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8. 4. 4. 규칙 제150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9. 6. 10. 규칙 제153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0. 6. 15. 규칙 제156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1. 6. 18. 규칙 제159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2. 11. 25. 규칙 제162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 지급에 대한 적용례) 제5조, 제7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3. 12. 22. 규칙 제165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칙 <2024. 5. 17. 규칙 제166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, 별표 3-2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

[별표 1] <개정 2020. 6. 15.>

단원의 구분 및 정원(제4조 관련)

(단위:명)

| 구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직책     | 정원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합창단         | 간부단원<br>(6명)     | 지휘자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단무장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반주자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부반주자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단원장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일반단원<br>(54명 이내) | 수석단원   | 4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차석단원   | 4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작·편곡단원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악보단원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획단원   | 2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연주단원   | 42명 이내 |    |
| 소년소녀<br>합창단 | 간부단원<br>(5명)     | 지휘자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단무장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반주자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안무자    | 1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일반단원<br>(80명 이내) | 일반단원   | 80명 이내 |    |

[별표 2] <개정 2016. 10. 20.>

**겸임수당 지급 기준표**(제5조제6호 관련)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   | 직책       | 금 액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합창단         | 지휘자      | 1,488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| 1,333,000 |   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| 1,146,000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    | 1,296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반주자     | 1,108,000 |    |
| 소년소녀<br>합창단 | 지휘자      | 1,333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| 1,146,000 |   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| 1,071,000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, 안무자 | 1,108,000 |    |

[별표 3] <개정 2024. 5. 17.>

예술단 봉급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호 봉 | 합창단, 소년소녀합창단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정   | 3,704,130    |     |
| 23  | 2,865,630    |     |
| 22  | 2,607,220    |     |
| 21  | 2,536,710    |     |
| 20  | 2,484,030    |     |
| 19  | 2,419,290    |     |
| 18  | 2,356,780    |     |
| 17  | 2,292,480    |     |
| 16  | 2,233,820    |     |
| 15  | 2,171,220    |     |
| 14  | 2,108,610    |     |
| 13  | 2,046,000    |     |
| 12  | 1,991,290    |     |
| 11  | 1,935,510    |     |
| 10  | 1,884,640    |     |
| 9   | 1,835,690    |     |
| 8   | 1,788,760    |     |
| 7   | 1,743,850    |     |
| 6   | 1,699,710    |     |
| 5   | 1,662,570    |     |
| 4   | 1,627,290    |     |
| 3   | 1,578,540    |     |
| 2   | 1,541,430    |     |
| 1   | 1,506,110    |     |

[별표 3-2] <개정 2024. 5. 17.>

예능수당 지급기준 및 월지급액(제6조제1항 관련)

- 1. 각 예술단 단원은 능력에 따라 등급제로 예능수당을 지급하며, 매년 정기 평정 결과에 따라 정한다.
- 2. 예능수당 월지급액

(단위 : 원)

| 등급 | 월지급액    | 합창단      | 소년소녀합창단  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1  | 700,000 | 지휘자      |           |    |
| 2  | 500,000 | 부지휘자     | 지휘자       |    |
| 3  | 450,000 | 단무장, 반주자 | 부지휘자, 단무장 |    |
| 4  | 350,000 | 부반주자     | 반주자, 안무자  |    |
| 5  | 300,000 | 일반단원     |           |    |
| 6  | 250,000 | 일반단원     |           |    |
| 7  | 200,000 | 일반단원     |           |    |

※ 단원장 및 수석단원이 평정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4등급으로 한다.

3.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

| 등급 | 평정결과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|
| 3  | 평정대상의 10% |    |
| 4  | 평정대상의 20% |    |
| 5  | 평정대상의 62% |    |
| 6  | 평정대상의 5%  |    |
| 7  | 평정대상의 3%  |    |

※ 평정결과 6,7등급 단원이 총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5등급 예능수당을 지급한다.

4. 작·편곡 단원, 악보단원 및 기획단원의 등급표

| 등급 | 대상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4  | 봉급호봉 14호봉부터 23호봉까지 |    |
| 5  | 봉급호봉 1호봉부터 13호봉까지  |    |

[별표 4] <개정 2016. 10. 20.>

직책수당(제6조제2항 관련)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   | 직책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합창단         | 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 | 4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| 28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                 | 2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                     | 18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단원장, 작·편곡단원               | 150,000 |    |
|             | 수석단원, 기획단원,<br>악보단원, 부반주자 | 150,000 |    |
|             | 차석단원                      | 100,000 |    |
| 소년소녀<br>합창단 | 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 | 28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| 2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                 | 18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, 안무자                  | 150,000 |    |

[별표 5] <개정 2016. 10. 20.>

비상임단원의 월액수당 지급기준표( 제6조제3항 관련)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   | 직책   | 금액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합창단         | 지휘자  | 9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| 8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| 75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반주자 | 7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수석   | 7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단원   | 600,000 |    |
| 소년소녀<br>합창단 | 지휘자  | 9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| 800,000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| 750,000 |    |
|             | 안무자  | 700,000 |    |

[별표 6] <개정 2016. 10. 20.>

예술단 여비 지급기준표(제6조제4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 | 직책   | 지급기준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합창단         | 지휘자  |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|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|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|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부반주자 |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수석단원 |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단원   |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소년소녀<br>합창단 | 지휘자  |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|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|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|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|             | 안무자  |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|

[별표 7] <개정 2020. 6. 15.>

조정수당(제6조제7항 관련)

(단위:원)

| 구분              | 직 책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합창단             | 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  | 45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 | 25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                  | 17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반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| 16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단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| 15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부반주자                       | 14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수석단원, 기획단원,<br>악보단원, 작편곡단원 | 12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차석단원                       | 11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연주단원                       | 100,000 |     |
| 소년<br>소녀<br>합창단 | 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  | 25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 | 20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                  | 160,000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반주자, 안무자                   | 160,000 |     |



[별표 8] <개정 2020. 6. 15.>

간부단원 획정호봉표(제8조제2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 | 직책       | 호봉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
| 합창단         | 지휘자      | 정 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| 23 |   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| 18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      | 20 |    |
|             | 부반주자     | 17 |    |
| 소년소녀<br>합창단 | 지휘자      | 23 |    |
|             | 부지휘자     | 18 |    |
|             | 단무장      | 17 |    |
|             | 반주자, 안무자 | 17 |    |

[별표 9] <개정 2021. 6. 18.>

호봉별 승급기간(제8조제7항 관련)

| 호봉            | 승급기간 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 | 재직 1년 |    |
| 14호봉부터 23호봉까지 | 재직 2년 |    |

[별표 10] <개정 2016. 10. 20.>

경력환산 기준표(제8조제8항 관련)

| 구분   | 경력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단위경력 | ○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군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사경력 | ○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<br>○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 활동한 경력<br>○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| 문화예술<br>위원회에서<br>사정한<br>연수 |

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16. 10. 20.>

## 안양시립(소년소녀)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

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안양시립(소년소녀)합창단 지휘자 ○○○의 위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약자 :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2. 계약상대자 : 안양시립(소년소녀)합창단 지휘자(이하 “지휘자”라 한다)
  - 가. 성명 :
  - 나. 생년월일 :
  - 다. 주소 :

제2조(위촉계약 기간) ① 위촉계약 기간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지휘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, 그 밖에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위촉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운영 및 성과계획의 제출) ① 지휘자는 해당 예술단의 연간 운영 및 성과계획을 시장과 협의 후 계약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운영 및 성과계획을 기준으로 지휘자의 근무실적을 매년 11월에 평가하고,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보수)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봉급 및 수당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적용한다.
2. 보수는 매월 공무원 급여 지급일로 한다.

제5조(위촉계약의 해지) 시장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해석) 본 위촉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지휘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그 밖의 계약 조건) ① 본 위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,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한다.

② 본 위촉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지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계약자

계약상대자

안 양 시 장 (직인)

안양시립(소년소녀)합창단 지휘자 ○○○(인)

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16. 10. 20.>

##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

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○○○의 채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약자 :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2. 계약상대자 :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(이하 “연구단원”이라 한다)
  - 가. 성명 :
  - 나. 생년월일 :
  - 다. 주소 :

제2조(채용계약 기간) ① 채용계약 기간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연구단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, 기타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채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정기평정) ① 연구단원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른 정기평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평정 결과 “양”이나 “가”를 받은 연구단원이 다음 번 채용공모에 응시할 때에는 불합격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보수)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봉급 및 수당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적용한다.
2. 보수는 매월 공무원 급여 지급일로 한다.

제5조(채용계약의 해지) 시장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해석) 본 채용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연구단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그 밖의 계약 조건) ① 본 위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,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한다.

② 본 위촉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연구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계약자

계약상대자

안 양 시 장 (직인)

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○○○(인)